대전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공고 제2025- 15호

2025년도 제5회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 공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5년도 제5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11월 4일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근무지
기간제 근로자 (운전원)	1명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업무용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및 호송 업무 지원 ○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의 호송 업무 지원 ○ 사무보조 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

*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전환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음.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시간	보수	공통
기간제 근로자 (운전원)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고정급 (월 2,490,210원)	※ 수당 :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 소속기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지급 ※ 4대보험 가입 (건강· 고용· 산재보험, 국민연금) ※ 세액공제전, 정액급식비 포함

*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근무시간 등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급여변동 가능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요건

○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

○ **거주지에서 근무지(충남 천안시 서북구)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아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운전직 지원 자격

○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회사(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에 소속되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실제 6개월 이상인 자**(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만을 인정)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차량**

○ **경력증명서에 대형 승합차량 운전경력이 확인 가능**해야 경력 인정하며 근무기간,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경력증명서는 채용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 경력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운전경력 실제 6개월 이상 기준은 공고일 기준(2025. 11. 4.) 충족하여야 함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국내 자격증으로 당해 시험의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면허정지 또는 취소(예정)인 자는 응시불가함.

○ 군 복무기간 중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에 인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군 운전경력확인서로 확인되어야 함

□ 우대사항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구분	우대사항
기간제 (운전원)	○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 등에서 운전경력으로, (경력의 합이) 1년 이상의 운전경력부터 인정하며 최대 3년까지 인정(연차별 차등 배점)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구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발행기관의 직인이 찍힌 경력사항에 대해서만 인정 * 3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응시자에 한해 경력인정(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력은 불인정) * 2개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일 단위까지 합산하여 인정하되, 일 단위는 15일 이상인 경우만 1월로 인정(합산 1년 이상 경력사항만 인정) ○ 외국어 능력 우수자 * TOEIC 700점 이상, 중국어 신HSK 4급 180점 이상 * 공고일 기준(2025. 11. 4.)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 기타 언어 불인정, 복수의 검정점수를 제출하였을 경우 하나의 점수만 인정(중복산정 불가) ○ 태권도·유도·검도 단증 보유자 * 최소 2단 이상,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에 한함, * 국기원·대한유도회·대한검도회 발급 단증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취득분까지 인정, 기타 무도 불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구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공고일 기준 이전 취득 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 가점 사항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법정가점과 사회가점은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금번 채용은 **채용분야 모집인원이 1명이므로 법정가점 미적용**함)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이력서(자기소개 포함),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하일 경우

- 응시자의 자격 · 제출서류 등이 부적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합격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경우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면접으로 검정,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 평정 요소

1)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위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단, 면접위원이 2명일 경우 위원 전원으로 한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임용결격사유, 신원조사 불합격 등)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5.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채용공고	2025. 11. 4.(화) ~ 2025. 11. 14.(금)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5. 11. 12.(수) ~ 2025. 11. 14.(금)	. 접수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대리인,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26번길 7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채용담당 (우) 34812, ☏ 042-220-2111 ※ 방문접수시간: :평일 09:00~18:00(12:00~13:00 접수 불가) **토 , 일 , 공휴일 접수 불가** **※ 등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25. 11. 1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1. 18.(화) 14:00 이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025. 11. 25.(화) 14:00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면접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1. 26.(수) 14:00 이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합격자 개별 통보

※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일정은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 예정일 : 2025년 12월 8일(신원조사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응시원서 접수처와 채용 시 근무장소가 다르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구분	제 출 서 류
필수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 ② 블라인드 응시원서 1부 ③ 이력서 1부 ④ 자기소개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남성은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초본추가 1부 발급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⑦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⑧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⑩ 공정채용확인서 1부 ⑪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별도서식이 없는 경우 (붙임10) 경력증명서 작성하여 제출 ⑫ 대형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 : 경찰서 발행문서로, 반드시 교통사고 경력과 법규 위반 경력의 전 기간이 표출되어야 함** ※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만 인정**
우대	① 공인 어학 성적증명서 1부 - 영어 TOEIC 700점 이상, 중국어 신HSK 4급 180점 이상 소지자 - 복수의 검정점수를 제출하였을 경우 하나의 점수만 인정 (중복 산정 불가) -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공고일 기준) ② 무도 단증 사본 1부 - 태권도, 유도, 검도에 한하여 인정하며 품증은 단증으로 변경 시 인정 - 복수의 자격증을 제출하였을 시 가장 유리한 하나의 단증만 인정 ③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 자체수리기능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 면접 전형시 우대항목 증빙서류 원본 확인함**
가산	①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증명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시간 명시) 등 증빙서류 제출

□ 최종합격자 등록 시

①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② 반명함판(3cmX4cm)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③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7. 참고사항

가. 기간제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지침을 적용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분야와 상관 없는 학력, 부모직업,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할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신원조사 또는 신원조회 결격사유,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접시험 결과 다음 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바.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붙임 11】 양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042-220-2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총괄표 1부.

2. 블라인드 응시원서 1부.

3. 이력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8.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9. 공정채용확인서 1부.

10. 경력증명서 1부.

1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다음 장의 붙임서류의 모든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붙임 1】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 .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운전원)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필수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붙임 1】	□ 제출 □ 미제출
	② 블라인드 응시원서 1부【붙임 2】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붙임 3】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붙임 4】	□ 제출 □ 미제출
	⑤ 주민등록등본 1부 (**남성은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초본 추가 1부** 발급)	□ 제출 □ 미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5】	□ 제출 □ 미제출
	⑦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붙임 6】	□ 제출 □ 미제출
	⑧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붙임 7】	□ 제출 □ 미제출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8】	□ 제출 □ 미제출
	⑩ 공정채용확인서【붙임 9】	□ 제출 □ 미제출
	⑪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각1부씩 필수 제출 ※ 근무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붙임 10】작성 제출	□ 제출 □ 미제출
	⑫ 대형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전 기간 표출)**	□ 제출 □ 미제출
해당자	①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② 무도 단증 사본 1부(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발급만 인정)	□ 제출 □ 미제출
	③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④ 사회형평가점 증명서류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 □에 서류 제출 여부를 √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성명 : (서명)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2】

블 라 인 드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5년도 제 5 회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운전원		(한자)
복수국적 해당 여부	- 해당 없음 () - 해당 있음 () (외국국적:)	생년월일	
현 주 소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		

○ 상기 본인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채용관리 등을 위한 상기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10년(보유기간 경과시 폐기)
* 거부시 불이익 조치 : 개인정보이용제공 부동의 시 본 채용에 대한 응시 불가

성 명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응 시 표** (기간제근로자)채용시험	
응시분야	운전원	성명	

20 년 월 일

대 전 출 입 국 외 국 인 사 무 소 장 귀 하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우편접수분의 응시표는 면접 당일 교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3. 면접시험 당일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5분전까지 관리과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4.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기재합니다.
5.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성　명: 정자로 기재합니다.(3군데)

③ 생년월일: 정자로 기재합니다.

④ 주　소: 현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⑥ 개인정보에 동의하는 경우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붙임 3】

【 이 력 서 】

1. 기본정보

성 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만 세), 성별 : 남 , 여
연락처	(본인 휴대전화)
	(기타 연락처)
E-—mail	
현 주 소	

2.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3.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근무처	근무일자	퇴직일자	담당업무	담당직위
1					
2					
3					
4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대 전 출 입 국 · 외 국 인 사 무 소 장 귀 하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업무실적,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대 전 출 입 국 · 외 국 인 사 무 소 장　귀 하

ㅇ 작성요령: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서명란은 반드시 자필서명)

ㅇ 유의사항: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보완요청 없이 불합격 될 수 있음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제출 서류 일체**
수집 및 이용목적	**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일 ~ 근로기간 종료시 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 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 수집항목	**자기소개서, 범죄경력정보, 신원조사 등**
수집 및 이용목적	**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일 ~ 근로기간 종료시 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 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수집 및 이용목적	**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일 ~ 근로기간종료시 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 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신청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은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 근로자에 채용되면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채용결격 사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채용 취소 등 법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 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 · 파면 · 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응시기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생년월일	.　.　.	응시분야	운전원

본인은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실시하는 자격,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 전 출 입 국 · 외 국 인 사 무 소 장　귀 하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붙임 9】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 작성자 인적사항

- 생년월일 :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 사항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 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대 전 출 입 국 · 외 국 인 사 무 소 장　귀 하

【붙임 10】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주당근무시간	비고 ②
	부터	까지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락처	
성 명	(인)

증명기관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 고 :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 기재)

【붙임 11】 **※필요시 제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 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